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금융회사등) 법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6.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8.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10.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11.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1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3조의2(금융회사등) 법 제2조 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 를 말한다. 1.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 른 여신전문금융회사 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 른 수산업협동조합 6.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 조합 7.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 마을금고 8.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 사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 사 10.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민금융진

홍원

11.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1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공단